

제 6 장 재산과 회계

제 30 조(재산의 구분) ①본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본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붙임 1”과 같다.
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 31 조(기본재산의 처분등) 본 협회의 기본재산을 변경(취득·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 32 조(수입금) 본 협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33 조(회계연도)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34 조(예산편성) 본 협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
제 35 조(결산)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 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36 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 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37 조(회계의 공개) ① 본 협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 월 말까지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
제 38 조(임원의 보수)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